



중일전쟁기 일제검열의 시선 전쟁기 신문검열의 작동양상과 실제

이민주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Japanese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Sino-Japanese War*

Min Ju Lee**

(Associate Professor, Future College of Liberal Arts, Far East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Japanese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over Korean private newspapers such as *Dong-A Ilbo* and *Chosun Ilbo* during the Sino-Japanese war, which occurred in 1937. Studies on censorship of Korean Newspape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had little focused on the late period of 1930s. Although the Korean private newspapers lost their status as an exponent of the Korean people due to the incident of the erasure of the Japanese national flag on the pages of newspapers in 1936, Japanese censorship on Korean private newspapers was still being executed in the late 1930s. Political censorship was even strengthened and elaborated because of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Japanese censorship on Korean private newspaper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in order to look into the traits of imperial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which was executed in extraordinary times of war. The data analyzed in the study are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censorship records published by the Japanese censorship bureau, the Book Depar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se are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and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Pages of Korean private newspapers such as *Dong-A Ilbo* and *Chosun Ilbo*, the main target of Japanese censorship, were also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wartime Japanese censorship, this study takes two approaches. First, censorship records published annually and monthly from 1937 to 1940 were examined to find out what kind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imposed on two Korean private newspapers, *Dong-A Ilbo* and *Chosun Ilbo*. 'Seizure', 'Erasure', and 'Attention' were the typical administrative sanction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1 Far East University Research Grant(FEU2021R21). (이 연구는 2021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FEU2021R21)

** minju77@hotmail.com

inflicted by the Japanese censorship bureau. After that, newspaper pages carrying sanctioned artic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identify how thes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ere actually reflected in the articles of Korean private newspapers. In doing so, this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Japanese censors' main concerns about Korean private newspaper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Sino-Japanese war was the first modern war in which the Koreans were systematically mobilized. Imperial Japan wanted to move people in Korea more efficiently by controlling Korean private newspapers. As a result, the conduct of Japanese censorship on Korean private newspapers became more fortified and elaborate because of the unusual circumstance of war. During this period, the number of seizures,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substantive laws, was decreased on the one hand. However, erasures and attentions, the expedient means of prior warning, were increased remarkably on the other hand.

Keywords: Japanese censorship, Korean private newspapers, Sino-Japanese war,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1. 문제제기

어떠한 권력도 자신들의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의 향방에 무관심할 수는 없다. 특히, 여론이 어떤 형태로든 권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근대사회 이래, 권력은 항상 언론을 통제 아래 두고자 했다. 권위주의적인 권력이든 자유주의를 표방한 권력이든 양상만 달랐을 뿐 언론통제는 지속되어 왔으며, 언론통제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권력이 행하는 검열이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공공연한 검열이 행해지기도 했다. 검열이 지속되는 한 검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전쟁기에 이루어진 검열은 전쟁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구성원의 동의를 기초로 하지 않는 가장 폭압적인 형태의 검열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 근대 미디어가 도입된 이후, 구성원이 적극 동원된 최초의 전쟁이 바로 일제하 중일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중일전쟁기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식민지 언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제검열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인한 필화가 휩쓸고 지나간 후, 1930년대 말 조선어 민간신문은 식민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이로 인해 조선민중을 대변하는 ‘언론정부’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일제의 검열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고자 했고, 이에 언론에 대한 검열은 더욱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 신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제검열의 양상과 실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일제하 조선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전시기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 조선어 민간신문들이 민중대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1930년대 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조선어 신문들에 대한 일제검열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해서인지 이 시기 조선어 신문에 행해졌던 검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도 조선어 신문과 조선어 신문에 대한 검열은 분명히 실행되고 있었고,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기 검열의 양상과 실제에 대해 접근해 보는 것은 일제검열의 특성이나 당시 조선어 신문이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말 중일전쟁기를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조선어 민간신문을 대상으로 행했던 검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검열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어 민간신문으로는, 실질적으로 폐간을 앞두고 있었던 〈조선중앙일보〉를 제외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었다. 따라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대해 행해진 검열

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일반을 살펴보기보다는 당시의 검열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이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내용과 검열로 압수되거나 삭제, 주의처분을 받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검열기록은 검열담당부서였던 경무국 도서관에서 월별로 발행한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와 연보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이며 이외에 조선어 민간신문의 당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기록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대상시기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시기부터 조선어 민간신문이 모두 폐간된 1940년 8월까지이다. 먼저 이들 검열기록에서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 특성을 분석해 보고, 실제 신문지면들을 찾아 행정처분을 받은 기사의 내용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일전쟁기 식민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열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고, 이전 시기와 다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1930년대 말 언론검열에 대한 연구의 경향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의 조선어 민간신문의 논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평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탓도 있었겠지만 소위 일장기 말소사건을 거치면서, 조선어 민간신문은 ‘민족지’로서 조선을 대변하는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들이 식민정부의 ‘기관지’와 다름없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1930년대 말 일제의 언론검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 한국언론사를 조망하는 가운데 일부로 언급되거나(김민환, 2006; 정진석, 1990) 일제의 대한(對韓) 언론·선전 정책을 살펴보는 중에 ‘대륙병참기지 정책 시기 언론검열이 간략히 언급되는(김규환, 1982) 정도였다. 이처럼 중일전쟁기 조선어 신문에 대한 검열을 직접적으로 다룬 기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부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정책이나 신문사설의 내용을 살펴본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일제 검열이 행해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중일전쟁기 일제의 언론정책에 대한 초기 연구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 언론사의 일부로 ‘친일보국시대의 언론’을 다루면서 ‘오욕의 친일언론상’을 사설이나 기사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폐간에 이르는 과정도 살펴보는 연구(최민지·김민주, 1978), 1931년부터 1941년

까지의 시기 동안 이루어진 일제의 '대륙병참기지' 정책을 크게 조망하는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선전활동과, 필름, 신문, 잡지 등에 대한 통제정책을 간략히 살펴본 연구(김규환, 1982), 일제언론탄압의 실상을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1937년부터 1939년 사이의 행정처분 건수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연구(정진석, 1975)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해당 시기의 언론정책을 살펴본 연구로는 우선 일제 말기 언론정책의 성격을 조선총독부의 '언론기관 통제계획'을 통해 접근해 본 최유리(1993)의 연구가 있다. '언론기관 통제계획'의 수립배경과 내용,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조선어 신문에 대한 통제안, 조선어 민간지 폐간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언론기관 통제계획'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다 보니 1939년부터 194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대상이 된 것이 아쉽다.

박용규(2001)는 좀 더 넓은 중일전쟁기부터 일본의 패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동안 일제가 식민지 조선 내에서 어떤 언론통제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언론에 어떤 구조변동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1930년대 말 조선 내 언론상황과 관련하여 일제가 언론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과 당시 조선 신문계의 현황, 신문사 통폐합 과정 등을 '언문신문통제안'과 같은 구체적 사료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박용규는 또한 1937년부터 1940년 사이, 조선어 민간신문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일제 지배정책에 대한 이들의 논조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 있다(박용규, 2005).

물론 언론검열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이후 최근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왔다. 일제하 전 기간 동안 식민지 조선, 일본, 대만의 신문검열을 살펴본 연구(이민주, 2020)나 몇몇 학자가 주축이 된 검열연구회에서 신문을 비롯 다양한 매체에 대한 검열을 해방 후까지 다양하게 살펴본 결과물들(검열연구회, 2011)도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쟁기 검열에 대한 연구나(고영란, 2012) 국내의 전쟁은 아니지만 자주 전쟁이라는 화마에 휩싸이는 미국 내 전쟁기 검열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신순철, 2009). 최근까지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쟁기 검열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을 것이며 이들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 미디어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중일전쟁기 검열연구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방대한 양의 연구가 존재하는 만큼 여기서는 대략적인 경향만 언급하였다.

요컨대, 1930년대 말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론정책 변화나 조선어 민간신문의 폐간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료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져 중일전쟁기 조선어 민간신문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조선어 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검열은 이들 민간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계속 행해졌던 만큼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검열은 일제하 전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특히 전쟁기에 이루어진 검열은 식민지

도구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일제 언론검열의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분석대상이 될 검열자료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중일전쟁기 식민지 조선 내 검열자료의 현황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1930년대 말 중일전쟁기를 대상으로 일제 식민 정부가 식민지 언론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열이 이전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중일전쟁기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일제검열의 작동양상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문제에 접근해 보기 위해 관련 사료를 수집·분석하는 역사적 문헌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이 될 중일전쟁기 식민지 조선 내 검열자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1940년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 내 언론검열에 대한 자료는 검열당국의 관련 기록들과 검열의 대상이 된 신문에 대한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열당국의 기록들 중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검열담당부서였던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발간했던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와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일 것이다. 전자는 1928년 9월부터 매달 간행되었으나 1938년 12월에 발간된 제123호까지만 찾아볼 수 있고, 후자는 연보형식으로 조금씩 제호를 바뀌가며 1940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살펴보면,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경우,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발간된 107호부터 1938년 12월에 간행된 123호까지의 기간 중에 109호~113호를 제외한 총 12개월 분량의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시기적으로는 짧지만 경무국 도서관의 검열기록 중 가장 자세한 기록으로 107호만 놓고 보더라도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연보인 <조선출판경찰개요>는 검열담당부서인 도서관 설립과 비슷한 시기부터 간행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조선에 있어서 출판물개요(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와 같은 제목으로 발행

되었으나 1933년 무렵부터 <조선출판경찰개요>라는 제목으로 통일되었다. 한 해의 언론단속(取締)상황을 종합하여 그 다음 해에 주로 발행되었다.¹⁾ 1941년 이후에는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중일전쟁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1938년분의 내용을 제외한 1937년, 1939년, 1940년에 이루어진 언론검열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압수처분을 받은 기사를 모아 엮은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도 검열당국의 주요 검열기록으로 언급되지만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의 경우 1936년까지는 발행되었으나 1937년부터는 따로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열대상이 된 주요 조선어 신문으로는, <조선중앙일보>의 실질적 폐간 이후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와 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발행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상으로 한 검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 신문은 제한적이거나 마이크로필름본이나 해당 신문사의 아카이브, 축쇄본 등을 통해 지면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검열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무국 도서관의 검열기록을 검토하여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 본 후 실제로 발행된 신문지면을 찾아 이들 행정처분이 지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²⁾

4. 검열기록을 통해 살펴본 중일전쟁기 조선어 신문에 대한 검열의 양상

1) 검열기록체계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말 조선어 신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성격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기 이전부터 언론통제를 위한 기초를 쌓는 데 공을 들였고 그 결과, 1907년 대한제국법률 제1호로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이 법은 1952년 폐기될 때까지 그 골조를 유지하며 조선인 발행 신문지에 적용되었고, 일제가 행한 모든 검열의 근거가 되었다. 주

1) <조선출판경찰개요>와 <조선출판경찰월보>는 발간연도나 발간월이 ‘취재’의 대상이 된 시기와 한 해 혹은 한 달씩 차이가 난다. 본문에서 이를 언급할 때는 ‘1938년분’과 같이 ‘취재’의 대상이 된 시기를 중심으로 했으며 인용 표기에서는 실제 발간연도를 표기했다.

2) 검열기록과 실제 지면을 대조·검토하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일제하 신문검열의 연구방법으로서 이전에 수행된 바 있다(이민주, 2010; Lee & Jung, 2016)

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사전검열의 근거가 된 제10조의 납본조항, 11조부터 16조까지의 게재금지사항, 제21조 내부대신의 발매반포금지조항 등이었다. 제21조의 경우, 신문지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할 경우 압수, 발행정지, 발행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행정처분의 중심이 되었고 이는 일제하 전 시기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30년대 말 조선어 신문에 적용되었던 행정처분의 종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37~1940년 사이에 발행된 <조선출판경찰개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법조항에 명기된 행정처분 외에도, 다양한 단계를 두어 소위 ‘취체(取締)³⁾’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7년도의 출판통제 상황을 담은 1938년 간행 <조선출판경찰개요>의 내용은 크게 출판물의 발행상황과 취체상황으로 나뉘는데, 신문잡지의 취체상황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취체’가 신문지규칙 제10조와 13조⁴⁾, 신문지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경무국 도서과, 1938). 그런 후에 기사로 게재할 경우 발매반포금지처분에 부쳐질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통고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신문기사의 게재차지(差止, prohibition)’의 네 단계, 즉 금지(ban), 경고(warning), 주의(attention), 간담(懇談, discussion)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1929년부터 1937년에 이르기까지 이 네 단계에 해당하는 ‘차지사항’ 건수를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적 구분을 ‘치안방해(disturbing public peace)’, ‘수사상의 필요(requirement for investigation)’, ‘군사관계(connection with military)’, ‘기타(others)’로 표기한 후 이를 다시 ‘타관청의 의뢰(request from other office)’와 ‘선내(鮮內)필요(need in Korea)’로 나누어 놓았으나 신문종별 구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 발행과 일본인 발행신문 모두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군사관계’ 건수가 이전에는 아예 없다가 1937년에 금지 4건, 경고 22건, 주의 30건, 간담 2건, 해제 21건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기사가 문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아쉽다. 다음은 이 표에서 연구 대상 기간인 1937년부터 1940년까지의 건수만을 추출해 제시한 것이다.

3) ‘취체(取締)’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단속’이나 ‘통제’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단속’이나 ‘통제’에 비해 좀 더 법이나 명령에 의한 규제를 강조하는 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검열기록의 내용을 직접 인용할 때 그대로 ‘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4) ‘신문지규칙’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이 발행의 신문에 적용되던 법조항으로, ‘신문지법’에 비해 완화된 형태의 통제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문지법’이 신문발행 허가제와 보증금제, 각종 게재금지조항과 벌칙, 발행된 납본제 등으로 사전검열을 명기화하고 있었다면 ‘신문지규칙’은 신문발행 신고제가 적용되었고 신문 발행 후 신문을 관할청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었다.

Table 1. The Number of Prohibition(差止) on Newspaper Articles from 1937 to 1940

		Reason									
		Disturbing Public Peace		Requirement for Investigation		Connection with Military		Others		Total	
		Request from other Office	Need in Korea	Request from other Office	Need in Korea	Request from other Office	Need in Korea	Request from other Office	Need in Korea	Request from other Office	Need in Korea
Ban	1937					3	1			3	1
	1938	1								1	
	1939					1		5		6	
	1940	10				1				11	
Warning	1937	17	17		4	17	5	8	1	42	27
	1938	15	9	3	9	7	7	10	3	35	28
	1939	5	15	2	3	8	5	8	1	23	24
	1940	29	5	1	9				1	31	15
Attention	1937	3	2			26	4			29	6
	1938	11		1	1	38	10	2	1	52	22
	1939	4	8	2	4	11	2	15	8	32	22
	1940	20	5		3	4		5		29	8
Discussion	1937		1			2		1			1
	1938										
	1939								1		1
	1940	1								1	
Release	1937	27	12			16	5	4		47	10
	1938	25	19	6	9	42	18	12	8	85	54
	1939		2	2	2	2		24	17	28	22
	1940	11	7		3	40	2		1	51	13

Recomposed from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pp. 43~45) by The Book Department, 1941.

〈조선출판경찰개요〉의 설명을 따르자면, 금지(禁止)란 사안이 가장 중대한 것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이 금지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매반포금지 및 차압, 압수 등의 행정처분에 부처지고 사법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대한 처분인 만큼 지주 행해지지는 않았는데 1937년에 이례적으로 군사관계 건수가 4건 기록된 점이 눈에 띈다. 경고(警告)는 신문기사의 취급에 관한 경계적(警戒的) 예고로서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편의적 수단이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회 분위기나 기사의 태도 등에 의해 금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의(注意)는 경미한 사태에 대해 장래 이 기사를 취급할 경우 주의하라는 것으로 역시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수단이다.

고, 마지막으로 간담(懇談)은 특수사항에 대해 기사의 취급에 대한 고려방식을 중용(從用)하는 것으로 당업자(當業者)의 덕의심에 호소하거나 게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하는 정도였다(경무국 도서관, 1938). 주의에 해당하는 차지사항에서 ‘군사관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른 것에 비해 많은 것과, 덕의심에 호소하는 가벼운 처분인 간담이 전쟁기간인 1930년~1940년 사이에는 거의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게재차지’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검열표준과 함께 1937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연보에 수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는 1936년도의 출판물 취체상황을 정리해 1937년 12월에 간행한 <조선출판경찰개요>부터 ‘신문·잡지·보통출판물의 취체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검열표준이 등장하고, 뒤이어 신문잡지의 취체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게재차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경무국 도서관, 1937). 이러한 구조는 1940년분의 <조선출판경찰개요>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게재차지’ 건수가 1929년부터 기록되어 있는 점이나 일본 본국에서 발행된 <출판경찰개관(出版警察概觀)>에는 1930년 전후부터 유사한 ‘검열표준’이 분명히 제시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內務省 警保局, 1930) 원래 존재하던 검열기준들을 1937년부터 명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어 민간신문들이 어느 정도 ‘순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시작한 시기이면서 검열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던 전쟁기간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게재차지’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뒤로 갈수록 자세해지고, 1940년에는 검열표준에 추가된 항목이 등장한다는 점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경무국 도서관, 1941).

한편, 연보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건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압수’ 처분이다. 건수표의 제목을 ‘신문지법에 의한 신문·잡지 행정처분 건수 연별표’라고만 제시하고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단일 항목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압수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주의·삭제건수 월별표’를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 표에 신문지규칙에 의한 것과 신문지법에 의한 것을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으로 나누어 1월부터 12월까지 제시한 것이었다(경무국 도서관, 1938, 155-159쪽). 다시 말해,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압수’와 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으나 검열 결과 신문과 잡지에 내려진 처분으로 ‘주의’와 ‘삭제’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는 ‘게재차지’의 단계로서의 ‘주의’와는 별개의 것이었다.

연보와 관련하여 이 ‘주의·삭제’ 건수가 등장하는 시기도 흥미롭다. 1930년대 초반에 발간된 <조선출판경찰개요>에는 따로 주의나 삭제처분을 받은 기사의 건수를 제시하는 표가 없다. 대신 압수처분을 받은 건수에 대한 기록이 훨씬 자세하다.⁵⁾ 조선인 발행 신문에 내려진 압수건수를 신문별로 나누어 1930년부터 연보발행 연도까지 달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1934년분 <조선출판경찰개요>의 압수건수표 중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한 것만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Number of Seized Articles on Korean Private Newspapers from 1930 to 1934

	Dong-A Ilbo					Chosun Ilbo				
	1930	1931	1932	1933	1934	1930	1931	1932	1933	1934
Jan.	9	4			1	4		1	4	
Feb.	4		1	1		2	3	1	2	
Mar.	2	1		1						
Apr.	1	1	1		1			3		2
May		1	2		2	1				2
Jun.		1		1		2		1	2	
Jul.		2	1	1	1	1	1	1	1	
Aug.			2		1		1			
Sep.	1	5			1	2	1			
Oct.	1	1		1	1				1	
Nov.	1	1		1	1	1				
Dec.	2					3	2	1		

Recomposed from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pp. 86-87) by The Book Department, 1935.

이렇게 월별로 건수를 기록하고 이를 다시 연도별 누계로 기록하고 있는 점은 검열당국이 압수처분에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랬던 것이 1936년 말에 간행된 <조선출판경찰개요>부터는 월별로, 신문별로 제시되던 압수건수가 대폭 간소화되어 월별 표기를 생략하고 연도별, 신문별로만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와 동시에 '조선내 신문지규칙/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된 신문잡지 주의삭제건수표'가 처음 등장하는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의', '삭제' 건수를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경무국 도서관, 1936). 이와 같은 경향은 1937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조선내

5) 법규에 의거해 조선인 발행 신문지에 내려지는 처분은 '차압'이 아니라 '압수'였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록 즉, 연보 및 월보에서는 이를 '차압'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조선인 발행 신문지에 내려진 처분을 지칭할 때는 비록 표기가 '차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압수'로 지칭하였다.

검열과 관련해서 ‘압수’와 같은 행정처분보다는 ‘주의’나 ‘삭제’와 같은 준행정처분 성격의 처분들이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연보에서는 매번 압수처분 건수를 제시한 바로 다음에 ‘신문지법에 의한 신문잡지 발행금지건수연별표’를 기입하고 있다. ‘발행정지’와 ‘발행금지’도 신문지법에 근거한 주요 행정처분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된 1937년 이후로는 기록이 없고, 역시 법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신문지규칙’에 의한 발행금지나 발행정지는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 식민정부에 ‘반항적’이었던 조선인 발행 신문에만 적용된 차별적 처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제시되고 있는 ‘취제’의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삭제’ 및 ‘주의’ 기록과 검열의 실제

월별로 검열현황을 기록한 <조선출판경찰월보>(이하 <월보>)의 기록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보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처럼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주의’와 ‘삭제’ 건수가 1937년 7월분의 <월보>에서는 ‘조선문 신문지 행정처분 일람표’ 아래 ‘차압’, ‘삭제’, ‘주의’로 나누어 신문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경무국 도서관, 1937년 8월). 즉, ‘주의’와 ‘삭제’도 실질적 행정처분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보>에서는 앞부분에 ‘출판물 납본건수 및 출판출원 건수 통계표’를 가장 먼저 제시한 후, ‘출판물 행정처분 건수 통계표’, ‘신문지 행정처분 건수 통계표’, ‘조선문 신문지 행정처분 일람표’, ‘간행물 차압처분 건수 통계표’, ‘간행물 삭제 및 주의건수 통계표’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실제 기록의 상당부분은 압수처분을 받은 신문지와 출판물 목록을 제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압수처분을 받은 신문지 목록에는 신문지 이름과, 발행연월일 및 호수, 처분연월일, 처분종류(치안방해/풍속괴란), 발행지, 언어종류만 나와 있을 뿐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신문지 삭제주의기사 일람표’에는 제호는 물론이고 발행연월일, 처분연월일, (처분)종류와 함께 간략한 기사내용까지 제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1937년 7월분부터 1938년 11월분까지 현재 확인가능한 <월보>에 제시된 조선어 신문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n Korean Newspapers from July 1937 to November 1938

	Disturbing Public Peace			Disturbing Morals			
	Seizure	Erasure	Attention	Seizure	Erasure	Attention	
Jul. 1937	2	6	1				9
Aug. 1937	4	7	2				13
Jan. 1938 ⁶⁾	1	8	1				10
Feb. 1938	1	8	3				12
Mar. 1938	2	6	5				13
Apr. 1938	3	5	3				11
May 1938	1	10					11
Jun. 1938	2	5	4				11
Jul. 1938	2	17	4				23
Aug. 1938	1	8	3				12
Sep. 1938	1	10	1				12
Oct. 1938		1	1				2
Nov. 1938	1	1	2				4

From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by The Book Department, published from August 1937 to December 1938.

위 표를 살펴보면, ‘풍속괴란(disturbing morals)’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건수는 아예 없다는 것이 먼저 눈에 띈다. <월보>에 기록되어 있는 ‘신문지규칙에 의한 것’ 부분, 즉 일본인 발행 신문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풍속괴란’ 행정처분 건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항목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선어 신문과 관련해서 검열당국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치안과 관련된 사안들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압수(Seizure)’ 건수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건도 되지 않은 반면, ‘삭제(Erasure)’ 건수는 평균 7건으로 많은 경우 17건에 달하기도 하며, 그 다음으로 ‘주의(Attention)’ 건수가 많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 검열처분의 중심은 ‘압수’가 아니라 ‘삭제’와 ‘주의’ 처분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삭제 및 주의처분을 받은 기사의 목록을 제시한 ‘일람표’를 살펴보면 또다른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107호(37년 7월분)와 108호(37년 8월분)에서는 ‘신문지 삭제주의기사 일

6) 1938년 1월분의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113호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114호에 전월(前月)에 대한 기록이 있어 함께 표기하였다.

람표로 제시되었던 삭제 및 주의처분 기사목록이, 114호(38년 2월분)부터는 ‘신문지 삭제 계고(戒告) 주의 및 근정(謹訂) 일람표’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109호부터 113호까지의 <월보>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기록이 변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전에 삭제와 주의로만 제시되었던 목록이 이전에 비해 훨씬 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 건수표에 ‘삭제와 주의’ 이외의 다른 처분종류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처분이었던 삭제와 주의를 좀 더 세분화한 처분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어 민간신문에 내려진 삭제 및 주의 처분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1937년 7월분부터 1938년 5월분까지 현재 확인가능한 <월보>에 제시된 ‘신문지 삭제주의기사 일람표’에서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기록들을 추출해 살펴보고,7) 관련 내용을 표로 만들어 부록 II에 제시하였다.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선 처분종별로 ‘삭제와 주의’, ‘근정’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근정’의 경우, 부록I에 제시된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오역(誤譯)이나 오식(誤植)과 같은 단순 실수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삭제’는 문제의 내용을 지우도록 지시해 지면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으므로 비교적 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기간이었던 만큼 ‘황군(皇軍)’ ‘병단장(兵團長)’ ‘~부대’와 같은 군사관련 기사나 어구에 삭제처분이 많이 내려졌고, ‘조선군’이나 ‘내지(內地)’, ‘남만인’과 같이 식민지와 일본 본국을 구분짓거나 이들 간의 차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삭제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1938년 2월 9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술 광고에 삽입된 일장기 사진까지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눈에 띈다.

‘주의’는 해당 기사를 취급할 때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주로 경제관련 기사나, 기사가 과도(過大)하다고 판단되거나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주의’ 처분의 내용 중에서 이목을 끄는 것은 1938년 2월 4일 <동아일보>에 내려진 ‘주의’ 처분이다. 일본의 건국기념일인 기원절을 기해 <동아일보>의 제호에 그려진 그림을 수정하라고 주의처분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지면을 살펴보면 ‘주의’ 처분의 성격을 더욱 잘 알 수 있으므로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7) 연구대상시기 전체 <월보>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삭제 및 주의기사를 모두 추출하면 지나치게 건수가 많아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 있는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일전쟁기에 발행되어 이용가능한 <월보>가 총 12개월 분량임을 고려한다면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전쟁 초기에 해당되어 전쟁기 검열의 작동양상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약 6개월 분을 추출하여 표로 만들었음에도 표가 상당히 길어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일전쟁기 조선어 신문에 대한 검열은 신문사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압수’와 같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삭제’나 ‘주의’ 처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 민간신문의 ‘비협조적’ 태도가 개선되어 ‘압수’와 같은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한 처분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시기에 검열을 통해 식민지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에 ‘삭제’나 ‘주의’와 같은 처분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식민지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 <월보>의 기록과 신문지면의 대조검토

검열로 인한 ‘삭제’ 및 ‘주의’ 처분이 실제 지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면, 앞에서 살펴본 1차적인 검열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를 통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유실된 지면도 많지 않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월보>의 ‘삭제’ 및 ‘주의’ 처분 기록과 실제 지면현황을 비교해 보고, 이를 표로 정리해 부록 III에 제시하였다.⁸⁾

‘삭제’ 처분을 받은 기사가 지면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간이나 석간 2면에 위치해 있는 기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조간과 석간을 8면 또는 4면으로 발행하고 있었는데, 1면의 경우 당시의 전쟁상황이나 국제정세를 전달하는 데 할애하고 있었고 2면에서 조선 내의 정치 및 사회 주요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전쟁상황을 전달하는 1면보다 2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쟁상황에서 조선어 민간신문이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보다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근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1면, 그리고 황실관련 기사에 주로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삭제’와 ‘주의’, ‘근정’ 처분을 받은 기사가 지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각각 살펴보자. 우선 ‘삭제’ 처분은 지면으로부터 지울 것을 지시받은 경우이므로, 사진검열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면으로부터 사라져야 한다. 만약 하나의 기사 전체가 ‘삭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부분이 비교적 크게 삭제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월보>의 기록 내용만으로 본다면, 하나의 기

8)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아일보> 아카이브와 달리 <조선일보> 아카이브는 조선일보사를 통해서 유료결제를 해야 부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검색엔진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 및 기사제목과 실제 지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중일전쟁기 처분의 대상이 된 기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본고에서는 <동아일보> 지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동아일보> 아카이브 1937. 7. 1 - 1938. 5. 31.).

사 전체가 삭제처분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937년 7월 15일자 ‘삭제’ 처분에 대한 기록에서와 같이 ‘~라고 제목한 기사’로 기록한 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 지면을 찾아보면 해당 기사의 경우 기사 전체가 아니라 기사 본문의 두 줄 정도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37년 7월 15일자, 석간2면). 전반적으로 볼 때, 1920년대 조선어 민간신문의 지면에서처럼 크게 삭제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없었지만 1937년 7월 29일자 ‘삭제’ 기사처럼 비록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사기는 하나 기사 전체를 몰러로 밀어 지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Figure 1) 좌측 중간 삭제흔적 참고). 1938년 3월 5일자 삭제처분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월보〉에 기록되어 있는 ‘삭제’ 처분 내용들이 특정 문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실제 지면에서도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삭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면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38년 4월 1일자 사설이다. ‘미국의 불황과 세계경제’라는 제목으로 조간 1면에 삭제 흔적 없이 게재되어 있다(〈동아일보〉, 1938년 4월 1일자 조간1면).



Figure 1. The Second Page of Morning Edition, Dong-A Ilbo, (1937, July 29)

‘주의’ 처분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제호의 도안변경을 명한 일이다. 한 신문사의 제호 도안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

과, 실제로 <동아일보>가 2월 10일자 발행분부터 제호의 도안을 변경하여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의’가 매우 실질적 행정처분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무궁화꽃을 배경으로 수놓아 한반도 모형을 만들었던 기존의 제호 도안을 아무런 무늬도 없이 줄로 매우는 형태로 변경하였다(<동아일보> 1938년 2월 10일자 석간1면).

‘주의’ 처분을 받은 기사들이 보여주는 특성은 해당 기사들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이다. 내용이 ‘과대(誇大)’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은 1938년 2월 3일자 기사는 ‘세민(細民)의 어채업권(漁採業權) 취소코 직권으로 재벌측에 이양’이라는 제목으로 석간2면 우측 상단 주요기사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면에서 가장 비중있는 기사였다. 1938년 3월 29일 ‘주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기사도 이와 유사하다. ‘대중수입은 퇴세(退勢)이나 물가폭등은 의연우세’라는 제목의 기사로 석간2면 우측 상단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역시 해당 지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사였다.

‘근정’ 처분을 받은 기사는 많지 않지만 지면 게재상황을 살펴보면 이 역시 몇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면에 게재된 황실 관련 기사 중 글자를 잘못 썼거나 번역을 잘못된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한 경우에 ‘근정’ 처분이 주로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월보>의 기록만으로 보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자가 오식되었거나 오역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근정’ 처분을 받은 경우 신문사가 다음 발간 신문 1면에 정정한 내용을 사고(社告)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육군정기이동기사’ 중 황족의 이름을 오식(誤植)했다는 이유로 ‘근정’ 처분을 받은 1938년 3월 2일자 기사의 경우, 석간 1면에 ‘특별지원장교의 진급만 약 194’라는 제목 아래 부제로 ‘육군정기이동발령’을 표기하고 황족 4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동 발령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 중 ‘왕(王)’자가 몇 차례에 걸쳐 ‘오(五)’자나 ‘옥(玉)’자 등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에 대한 정정 기사를 다음 발간호 1면에 두 차례에 걸쳐 공고하였다(<동아일보> 1938년 3월 2일자 조간1면, 1938년 3월 4일자 석간1면). 이는 곧 ‘근정’ 역시, 단순한 경고성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실질적 처분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월보>에는 기록되지 않은 ‘근정’ 처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지면을 검토하다보면 <월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근정’ 내용을 1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1938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 석간 1면에는 황족 이름 중, 한(閑)자를 민(閔)자로 오식했다는 근정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근정’ 처분을 받지 않은 내용을 신문사가 스스로 1면을 할애해 정정보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월보>에는 기록되지 않은 처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삭제’나 ‘주의’ 처분이 실제 지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해 보면,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이 신문의 지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처분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쟁시기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면에 주목해 군사관계 정보나 명칭 등을 글자 단위까지 세세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군사관계 기사는 아니지만 주요기사 자리에 게재되어 당시 식민지 경제상황 등을 비판적으로 전달하는 기사에는 '주의' 처분을 내려 이후 유사한 기사가 게재되지 않도록 경고했다. 신문 1면에 게재된 황족관련 기사에서 오식이나 오역이 발견되면 '근정' 처분을 내리고 해당 내용을 정정하는 기사를 내도록 했다는 것도 지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세밀하게 검열을 수행하고 이것이 지면에도 반영되도록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한 의미의 사전검열 수행이 힘들었던 신문검열의 특성상 지면에 기사가 잔존하거나 기록되지 않은 처분이 존재하는 등 검열의 기록과 실행이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왜 지금 전쟁기 검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일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기 검열은 검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전쟁은 국익이라는 명목 아래 검열을 정당화하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에 구성원을 동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쟁과 함께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중일전쟁기 검열의 경우, 한국 사회에 근대 미디어가 도입된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첫 전쟁이자, 식민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민족의 식민정부가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 행한 검열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일전쟁기 조선어 신문에 대한 일제 검열의 특성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위 '일장기 말소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어 민간신문들은 조선 민중을 대변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임을 자임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검열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대륙침략의 시작을 알렸던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는 식민지 주민을 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필요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식민지 언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식민정부에게 더욱 중요해졌을 것이다. 식민지 언론을 통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검열이었으며 이에 검열은 강화, 혹은 최소한 보다 정밀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었다.

중일전쟁기 조선어 민간신문에 행해진 일제 검열의 특성을 검열처분별로 정리해 보면, 우

선 ‘압수’와 같은 실질적 법규에 기반한 행정처분보다 검열표준이나 ‘게재차지’와 같은 행정명령적 경고수단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세세하게 기록했던 압수처분 기록은 상당히 간소화된 대신,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공식화하지는 않았던 검열표준과 ‘게재차지’의 단계들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하고 해당 처분의 내용에 ‘군사관계’ 조항들을 신설 혹은 추가하여 실제 검열에 직접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처분의 단계상 사전경고성으로 존재했으나 실질적 처분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었던 ‘삭제’와 ‘주의’ 처분이 이 군사관계 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열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주의’ 처분은 신문사 제호 도안이나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사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쉬운 부분에 세세하게 내려졌고, ‘근정’이라는 보다 가벼운 별도의 하위분류로 세분화되어 전쟁과 관련해서는 글자 한 자까지도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열로 인한 처분의 대상이 된 조선어 민간신문의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역시 군사 관계 내용이 가장 많았고 ‘일장기’의 사용이나 ‘제호 도안’까지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검열의 시선이 상당부분 지면2면에 머물렀던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조선 내의 정치 및 사회 주요뉴스를 전달하는 2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조선 내의 여론을 통제하고자 했던 검열당국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법’이나 ‘단속’을 빌미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통제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일전쟁기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일제 검열의 특성과 실상을 검열기록과 지면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식민지 검열연구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검열기록이라는 단일 사료만을 검토하여 검열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검열받은 지면과 대조하여 봄으로써 검열처분의 실효성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신문이 조선어 민간신문에 한정되어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살펴보기 못한 점이나, 검열기록에서 출발하여 검열 처분이 지면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검토하는 이외에 특정 기간 동안의 지면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기록되지 않은 검열의 흔적이 없는지 찾아보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남는다. 1938년 12월 이후의 <월보>를 찾을 수 없어 삭제 및 주의기사 검토에 시기적 한계가 있었던 점도 아쉽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oi, M., & Kim, M. (1978). *The history of Korean pres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eoul: Ilwolsaegak.
- Choi, Y. L. (1993). A study on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policy toward Korean press during the last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Ewha Sahak Yeongu*, 20-21, 189-203.
- Jung, J. (1975). *History of struggle of Korean pres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eoul: Jungeumsa.
- Jung, J. (1990). *History of Korean press*. Seoul: Nanam.
- Kim, K. (1982). *Japanese policy of the press and propaganda in colonial Korea*. Seoul: Yiwoo.
- Kim, M. (1996). *History of Korean press*. Seoul: Namam.
- Ko, Y. (2012). 'Chosun War/Korean War' or 'split/partition' - in regard to approval of memory. *Daedong Cultural Studies*, 79, 63-91.
- Lee, M. J. (2010). *A study on censorship of Korean private newspaper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J. (2020). *Empire and censorship*. Seoul: Somyong.
- Lee, M. J., & Jung, K. (2016). The practice and recording of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A critical review of the Chosun Publication Monthly Police Report. *The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6(2), 223-242.
- Park, Y.-G. (2001). A study on press control polic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press system during the last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46(1), 194-228.
- Park, Y.-G. (2005). The change of Korean newspaper editorials on the ruling policies of imperialist Japan in colonial Korea - Focused o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28, 111-140.
- Research Society for Censorship (2011). *Colonial censorship: Institution, text, practice*. Seoul: Somyong.
- Shin, S.-C. (2009). Discourse of war merged by politico-military-media complex in the U.S. *Hyonsang-gwa-Insik*, 107, 68-91.

Historical Material

- The Book Department (1937, August).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107.
- The Book Department (1937, September – 1938, December).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108-123.

The Book Department (1935).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Book Department (1936).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Book Department (1937).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Book Department (1938).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Book Department (1941).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Police Bureau (1930). *The summary of Publication Police*.

The archive of *Dong-A Ilbo*, 1937, July 1 – 1938, May 31.

최초 투고일 2022년 0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0월 23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2월 23일

부록 I

- 김열연구회 (2011).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서울: 소명출판.
- 고영란 (2012). '조선/한국전쟁' 혹은 '분열/분단' - 기억의 승인을 둘러싸고. <대동문화연구>, 79호, 63-91.
- 김규환 (1982). <일제의 대한언론·선전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출판.
- 박용규 (2001).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194-228.
- 박용규 (2005).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 변화: 일제 말기(1937~1940)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8호, 111-140.
- 신순철 (2009). 미국 정군언 복합체의 전쟁담론 독점화. <현상과 인식>, 107호, 68-91.
- 이민주 (2010). <일제시기 조선어 민간신문의 검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민주 (2020). <제국과 검열>. 서울: 소명출판.
- 정진석 (1975).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서울: 정음사.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출판.
- 최만자·김민주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최유리 (1993). 일제 말기 언론정책의 성격: 동아·조선일보의 폐간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0·21집, 189-203.
- 경무국 도서과 (1937년 8월). <朝鮮出版警察月報>, 107호.
- 경무국 도서과 (1937년 9월-1938년 12월). <朝鮮出版警察月報>, 108-123호.
- 경무국 도서과 (1935). <朝鮮出版警察概要>.
- 경무국 도서과 (1936). <朝鮮出版警察概要>.
- 경무국 도서과 (1937). <朝鮮出版警察概要>.
- 경무국 도서과 (1938). <朝鮮出版警察概要>.
- 경무국 도서과 (1941). <朝鮮出版警察概要>.
- 內務省 警保局 (1930). <出版警察概觀>.
- <동아일보> 아카이브 1937. 7. 1 - 1938. 5. 31.

부록 II <월보>에 제시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삭제주의기사 일람표

제호	발행연월일	처분연월일	종별	기사
조선일보	37년 7월 14일	37년 7월 15일	삭제	감서지사(甘庶知事)부처(夫妻)황군(皇軍)위문(위문)이라고 제목한 기사
동아일보	37년 7월 15일	37년 7월 16일	삭제	'황군 기원제'라고 제목한 기사
동아일보	37년 7월 29일	37년 7월 29일	삭제	'아간환승은 사절'이라고 제목한 기사
동아일보	37년 7월 31일	37년 8월 1일	삭제	'개성(開城)에서 무운(武運)기원제'라고 제목한 기사
조선일보	37년 8월 7일	37년 8월 6일	주의	'빈빈(頻頻)한 열군(列軍)방해'라고 제목한 기사
조선일보	37년 8월 8일	37년 8월 7일	삭제	○졸부대 전사자(戰死者) 발표기사 중 '조선군의 문자
동아일보	37년 8월 18일	37년 8월 17일	삭제	이왕전하 위문품 어하사의 기사 중 '병단장(兵團長)' '제20사단의 문자
조선일보	37년 8월 21일	37년 8월 21일	삭제	'요지(要地)의 응급방위(應急防衛)' 문자 다음부터 삭제
동아일보	37년 8월 22일	37년 8월 22일	삭제	'응급방위의 문자 다음부터 삭제
동아일보	37년 8월 29일	37년 8월 28일	삭제	'川岸 병단장'의 문자
조선일보	37년 8월 29일	37년 8월 28일	삭제	'OO부 단장'의 문자
조선일보	38년 2월 3일	38년 2월 3일	주의	박춘금의 의회에서 질문기사를 게재
동아일보	38년 2월 3일	38년 2월 4일	주의	세민(細民)의 어채권(漁採權)취소 직권을 재벌에 이양'이라고 제목한 기사 과대(誇大)
동아일보	38년 2월 3일	38년 2월 4일	주의	기원절을 기해 제호(題號)의 권화(權花)도안의 개정을 명함
동아일보	38년 2월 9일	38년 2월 10일	삭제	신세계라는 술의 광고 중에 일장기를 삽입한 것
조선일보	38년 2월 9일	38년 2월 19일	삭제	상동
조선일보	38년 2월 10일	38년 2월 11일	삭제	헌법발포라고 제목한 기사중 원수(元首)는 국가기관의 최고위로 한다 운운 부분 4행
동아일보	38년 2월 22일	38년 2월 23일	삭제	관리차별철폐 관선(官選) 도의(道議) 폐지에 관한 안호식 의원 질문기사
조선일보	38년 2월 24일	38년 2월 25일	삭제	'川岸병단장'의 자구(字句)
동아일보	38년 3월 2일	38년 3월 1일	근정	'육군정기이동기사' 중 황족의 어명(御名)을 오식
동아일보	38년 3월 2일	38년 3월 1일	삭제	昔日 민중운동의 총본산인 흥화관 매각된다고 해서 물의 부분
동아일보	38년 3월 5일	38년 3월 4일	삭제	함남호(咸南號) 명명식 본궁 거행'이라고 제목한 기사 중 本宮

조선일보	38년 3월 10일	38년 3월 9일	삭제	'팔면봉'란 '의무에 있어서는 일본내지에 조금도 다르지 않은 OO하는 대세의 기사
조선일보	38년 3월 19일	38년 3월 18일	주의	'세민(細民)을 올리는 세금'이라고 제목한 기사
조선일보	38년 3월 28일	38년 3월 27일	삭제	'팔면봉'란 관전(官專) 입학생 비율로 본 염원씨의 이매설(二枚舌) 운운
동아일보	38년 3월 30일	38년 3월 29일	근정	'황후폐하 행계 어중지(行啓御中止)'라고 제목한 기사 오역(誤譯)
동아일보	38년 3월 29일	38년 3월 29일	주의	대중수입은 퇴세(退勢)하는데 물가폭등은 의연 우세
조선일보	38년 4월 8일	38년 3월 31일	삭제	'도 당국이 증용 우리도 추종'이라고 제목한 기사
동아일보	38년 4월 1일	38년 3월 31일	삭제	'미국의 불황과 세계경제'라고 제목한 기사
조선일보	38년 4월 5일	38년 4월 4일	주의	'중압(重壓)하의 호경기'라고 제목한 표제 온당함을 결어함
조선일보	38년 4월 13일	38년 4월 12일	삭제	애국기 황해호와 비행장 한남식이라고 제목한 기사의 신설 비행장에 관한 것은 차지사항 저축에 부침
동아일보	38년 4월 19일	38년 4월 19일	주의	대판(大阪) 에코노미스트라는 번역문 동아(東亞)블록과 현 조선경제의 단계'라고 제목한 기사중 '식민지조선' '일선블록' 등의 자구사용
조선일보	38년 4월 23일	38년 4월 22일	삭제	역사기록 조양회관부에 기부를 증용이라고 제목한 '조선각지에 들끓듯 일어난 신십(新十)민중운동의 도장(道場) 운운 자구는 불온당에 부쳐짐
조선일보	38년 5월 1일	38년 4월 30일	삭제	위문대(慰問袋) 4천개라고 제목한 기사중 대구 영목부대의 문자
조선일보	38년 5월 3일	38년 5월 2일	삭제	OO부대의 무훈 노획품(虜獲品) 디수라고 제목한 기사 중 전지에 있어 군기제(軍旗祭)를 거행 운운한 부분
조선일보	38년 5월 14일	38년 5월 13일	삭제	'교장 불신(不愼)언행에 학부형 분개'라고 제목한 기사 중 '남만인(南蠻人)' '내지인' 등의 글자
동아일보	38년 5월 14일	38년 5월 14일	삭제	'용산부대의 자구
조선일보	38년 5월 16일	38년 5월 15일	삭제	'팔면봉'란 중 O時도 O한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회포부터 운운한 자구
조선일보	38년 5월 16일	38년 5월 15일	삭제	천도교 음모사건 전부 불기소라고 제목한 발표 외의 기사
조선일보	38년 5월 27일	38년 5월 26일	삭제	'청주 응소(應召) 군인 무운장구 소원'이라고 제목한 기사 중 소집월일, 인원기재

출처: 경무국 도서관, 《朝鮮出版警察月報》, 1937년 8월~1938년 6월.

부록 III <월보>의 기록과 <동아일보> 지면현황 대조표

발행연월일 (처분연월일)	종별	<월보>의 기록내용	<동아일보> 지면 현황
37년 7월 15일 (37년 7월 16일)	삭제	'황군 기원제라고 제목한 기사	(7월16일자) ⁹⁾ 석간2면 해당 기사 두 줄 정도 삭제
37년 7월 29일 (37년 7월 29일)	삭제	'아간환송은 사절'이라고 제목한 기사	조간2면, 롤러로 밀어 지움
37년 7월 31일 (37년 8월 1일)	삭제	'개성(開城)에서 무운(武運)기원제라고 제목한 기사	(8월1일자) 석간2면 기사 잔존
37년 8월 18일 (37년 8월 17일)	삭제	이왕전하 위문품 어하사의 기사 중 '병단장(兵團長)' '제20사단의 문자	석간2면 해당 글자 삭제
37년 8월 22일 (37년 8월 22일)	삭제	'응급방위의 문자 다음부터 삭제	석간2면 관련기사 있으나 삭제흔적은 따로 없음
37년 8월 29일 (37년 8월 28일)	삭제	'川岸 병단장'의 문자	석간2면 '위문전(慰問電)과 사전(謝電)' 기사 내용 중 부제 및 본문 몇 글자 삭제
38년 2월 3일 (38년 2월 4일)	주의	세민(細民)의 어채권(漁採權) 취소 직권을 재벌에 이양이라고 제목한 기사 과대(誇大)	(2월4일자) 석간2면 1단기사
38년 2월 3일 (38년 2월 4일)	주의	가원질을 기해 제호(題號)의 권화(權花)도안의 개정을 명함	2월10일자부터 도안변경
38년 2월 9일 (38년 2월 10일)	삭제	신세계라는 술의 광고 중에 일장기를 삽입한 것	(2월10일자) 석간3면에 해당광고 게재. 일장기 없음
38년 2월 22일 (38년 2월 23일)	삭제	관리차별철폐 관선(官選) 도의(道議) 폐지에 관한 안효식 의원 질문기사	찾을 수 없음
38년 3월 2일 (38년 3월 1일)	근정	'육군정기이동기사 중 황족의 어명(御名)을 오식	석간1면 '특별지원장교의 진급만 약 194'라는 제목 아래 '육군정기이동발령기사
38년 3월 2일 (38년 3월 1일)	삭제	昔日 민중운동의 총본산인 흥학관 마감된다고 해서 물의 부분	조간7면 기사전체 롤러로 밀어 지움
38년 3월 5일 (38년 3월 4일)	삭제	함남호(咸南號) 명명식 본궁 가행이라고 제목한 기사 중 本宮	조간3면 기사전체 삭제 흔적
38년 3월 30일 (38년 3월 29일)	근정	'황후폐하 행계 어중지(行啓御中止)'라고 제목한 기사 오역(誤譯)	석간1면 해당 기사 있음
38년 3월 29일 (38년 3월 29일)	주의	대중수입은 퇴세(退勢)하는데 물가폭등은 의연 우세	3월30일자 석간2면
38년 4월 1일 (38년 3월 31일)	삭제	'미국의 불황과 세계경제'라고 제목한 기사	조간1면 사실 삭제흔적없음
38년 4월 19일 (38년 4월 19일)	주의	대판(大阪) 에코노미스트라는 번역문	조간3면 '동아발락과 현조선경제의 단계' 대판 에코노미스트에서
38년 5월 14일 (38년 5월 14일)	삭제	'용산부대의 지구	조간2면 '龍山部隊의 전상장병(戰傷將兵) 귀환' 기사있으나 삭제흔적 없음

9) <월보>에 기록된 신문의 발행일과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지의 날짜가 다른 경우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중일전쟁기 일제검열의 시선 전쟁기 신문검열의 작동양상과 실제

이민주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본 연구는 1930년대 말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 민간신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제검열의 양상과 실제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일제하 조선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전시기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조선어 민간신문들이 민중대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1930년대 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조선어 신문들에 대한 일제검열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해서인지 이 시기 조선어 신문에 행해졌던 검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도 조선어 신문과 조선어 신문에 대한 검열은 분명히 실행되고 있었고,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기 검열의 양상과 실제에 대해 접근해 보는 것은 일제검열의 특성이나 당시 조선어 신문이 놓였던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말 중일전쟁기를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서 조선어 민간신문을 대상으로 행했던 검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에 발행되고 있었던 주요 조선어 민간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당시의 검열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이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내용과 검열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주요 검열기록은 검열담당부서였던 경무국 도서관에서 월별로 발행한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와 연보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이다. 먼저 이들 검열기록에서 행정처분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어 분석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신문지면들을 찾아 행정처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중일전쟁기 식민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열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핵심어 : 일제검열, 조선어 민간신문, 중일전쟁, 조선출판경찰월보, 조선출판경찰개요